
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局條例中改正條例(案)

서울特別市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

<별표>중 기능직의 8등급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를 8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로 하고,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를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

사로하고, 9등급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표결사를 9등급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표결사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(안)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	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직원정원표
○ 별정직	○ 별정직
- 비서(7급상당) 1	- (현행과 같음)
- 비서(9급상당) 1	- (현행과 같음)
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	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
-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상당 2	- (현행과 같음)
○ 일반직	○ 일반직
- 지방서기관 1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주사 3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주사보 3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서기 3	- (현행과 같음)
- 지방행정서기보 2	- (현행과 같음)
○ 기능직	○ 기능직
- 8등급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 2	- 8등급.....(필기)
-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속기사 2	- 10등급.....(필기).....
- 8등급지방기계원 또는 지방전기원 2	- 8등급(현행과 같음)
- 9등급지방사무보조원(조무)-표결사 1	- 9등급.....(필기)
- 10등급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2	- 10등급(현행과 같음)
- 10등급지방방호원 2	- 10등급(현행과 같음)
- 10등급지방운전원 2	- 10등급(현행과 같음)